



제277회 임시회 시정질문 · 답변

시정질문과 답변내용(일문일답)입니다.



안 경자 의원

“중앙로지하도상가 재검토 요청”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 경 자 의 원

● 안경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부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류도시 대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중앙로지하상가 관련 275회 5분 자유발언과 276회 시정질문 이후 이장우 시장의 답변에 기반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의 여지를 찾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서류를 들고 온 것은 그간에 제가 이 많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여지를 찾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서류를 가지고 왔고요.

오늘 사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상인들의 목소리를 이장우 시장께서 들으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시민의 목소리도 귀담아 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 혹시 이견이 있으면 이장우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장우 시장님, 괜찮으시지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집행기관석에서) 예.

이 상황에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잠깐만요, 안경자 의원님 일괄질문입니까, 일문일답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하시는 거지요?



● 안경자 의원

중간중간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필요할 때만 시장께서 나오시게 하실 겁니까?

● 안경자 의원

예.

●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예.

● 안경자 의원

그래서 저는 서로 시민과 관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혁 좀 띠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간단하게 중앙로지하상가 연혁을 말씀드리면 1997년 4월 30일 영진유통의 파산으로, 대전시의 요청으로 상인들이 운영위원회를 급하게 결성해서 시장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단법인 아닌 관계로 사단법인 결성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 대우도 부도를 맞게 됩니다.

사실 대전시에서 관리를 직접 해야 되지만 대전시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운영위원회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과정이 대우에서 모든 관리권을 전부승계하는 과정의 계약을 통해서

대전시와 대우건설이 계약을 하고 대우와 운영위원회가 관리하게 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 동서관통도로 개설 및 지하도로관리협약을 대우와 하고 그다음에 대우는 부도가 났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런 과정 속에 4차에 걸쳐서,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인들의 지위는 타 지역 상인들의 위치와 무상·유상 사용자들과는 다르다는 점, 이분들은 전부승계를 받은 포괄승계인의 위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차에 걸쳐서 관리기간 연장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이 2019년에 이루어졌고 현재 2024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동안 중앙로지하상가는 그들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관리되는 과정,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대통령상을 두 번 수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도 받고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서 전국에서 말하자면 수범사례로 되어서 벤치마킹을 오는 그런 시장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2010년부터 순천, 수원, 춘천, 논산, 광주, 전국에서, 여기에는 주요한 것만 넣었지만 수없이 많은 상가들이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천하고 광주도 갔습니다만 거기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2017년 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시 35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37분 영상자료 종료)

이렇게 활성화되었던 시장이 코로나 위기로 지금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상인들이 이장우 시장께 하고 싶은 목소리를 조금만 담으려다가 제 목소리보다는 그들이 시장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목소리를 담아내고 싶은 전전대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의 억울함이 있어도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본인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순간 계약해지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그들의 목소리는 담지 못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10시 38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49분 영상자료 종료)

순천 지하상가는 순천시와 상인들이 무상사용기간 이후 직접 계약해서 관리해오고 있고요, 광주는 무상사용기간 끝나기 전에 부도로 인해서 광주시가 직접 관리하다가 2011년 광주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시와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직접 계약을 통해서 관리위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시장과의 비교는 불가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들이 전국의 시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2006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시행되고 개정, 개정하고 2022년 4월에 무상사용기간과 유상사용기간 해서 또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상사용자들에 대한 법이고 지금 이분들은 동서관통도로 계약에 의해서 무상 20년 받고 나서 그다음부터 유상으로 계속적으로 계약을 해왔던 관계라서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고 적용도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기존 동서관통도로 협약에 의해서 해왔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듣고 마음을 열고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는 3일 동안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장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우선 안경자 의원님 소상공인들 걱정하시고 하는 마음 잘 알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대전광역시장은 시민들이 선출할 때 법률에 근거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법을 위반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공직자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재량권을 하는 것은 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경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주셨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사용기간은 총 30년, 무상 20년 · 유상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안타까운 상황이라도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시장으로서의 책무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 지하상가 관련해서 시에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를 재임대하는 상황입니다만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가 어떤 경우가 들어왔느냐면 월세 7천만 원 보장에 1칸에 20억을 요구한 사례도 있고 점유자 운영 매매의사 20억, 전대 보증금 1억에 월세 2천만 원, 그리고 전대 합계 4,500만 원, 전대 권리금 1억 보증금에 월세 1,350만 원, 전대 보증금 월 1억에 1천만 원, 그리고 3천만 원 보장, 1천만 원 보장, 매매가 6억 5천만 원에 보증금 4천에 월세 450만 원, 이런 수많은 전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건 공공의 재산입니다.

사실상 시민들의 재산을 30년 사용하고 이걸 팔고 그것을 재임대해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그런 과정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경우로는 현재 직접 운영하는 분들은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시 전대해서 상당한 임대료를 내가면서 하는데 내용이 또 심각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임차인 모임에서 진정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운영사용권을 가진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들입니다.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공유물이기에 전대 및 매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라는 편법으로 실질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전대자들은 우리에게 임대료를 부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자 비율은 1 대 99로 하여 시에서 부과되는 대부료와 각종 세금, 전대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시에 납부하는 대부료의 몇 배가 되는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사업비율이 99라는 것 때문에 모든 세금을 임차인이 부담하였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이 아닌 공동사업자 계약임을 알바생들을 동원하여 사인하게 하였고 이에 불응할 시 영업을 못 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공개입찰에 참가하면 형·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의 비율이 상가 전체로 보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타 지역 거주자도 30%가 넘습니다. 시에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니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에 대전시 정치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요구인 현 상태 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조금 전의 이 자료는 그동안 운영형태와 전대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녹취록도 있습니다.

일부 녹취록 중에는 상당히, 저희가 수사를 의뢰할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정서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 의뢰 그리고 부당이익을 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장이나 시의원님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법을 지켜라, 규정을 지켜라 하는 건데.

● 안경자 의원

맞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지금 의원님은 계속 법을 위반해서 묘수를 찾아라 하는 건데 지금 묘수가 없습니다.

● 안경자 의원

저는 법을 위반해서 묘수를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하신 건 그 얘기와 똑같습니다.

● 안경자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면 의원님께서 명확한 법 안에서의 대안이 뭡니까?

● 안경자 의원

저는 사실은 시장의 재량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시장의 재량권은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안경자 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지요,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건 저도 공감하고.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원칙이 아니고, 시장의 재량권은 법 안에서.

● 안경자 의원

상인들에게도 처음부터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상당 부분은 법을 위반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 안경자 의원

아닙니다.

아니고요, 시장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2010년부터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저는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제기했는데 저는 남의 일이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접하기 전까지는요.

시장님의 우려도 이해가 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광주 말씀을 하셨는데요.

광주는 어떤 상황이냐면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사인 간의 계약으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임대차계약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잘못됐기 때문에 최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만 최근 사용허가 포기자에 대해서는 임대 일반경쟁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안경자 의원

맞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 얘기는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지적되었고 감사원 감사에서 법률에 근거해서 제대로 하라는 조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전시가 그런 조치로 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건 시의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시장의 재산도 아니고.

● 안경자 의원

맞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면 시장은 시민들의 재산을 아주 형평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 안경자 의원

맞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모든 시민들은 지하상가에 가서 사업을 하고 싶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소수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시장으로서 어떻게 특혜를 줍니까?

● 안경자 의원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사실은 시에서 파악이 진즉에 됐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시장님.

이게 14년 동안 이렇게 해오는 동안 사실은 관행처럼, 감사원 감사 지적이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양도·양수가 되는 상황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대전시가 지금 이 상황을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과 원칙의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제 질문…….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래서요, 이 문제는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에 보니까 혀태정 시장 때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전인가, 아마 권선택 시장 때인지도 모르겠네요, 2018년이면.

감사원에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하도상가 조례로 전대, 양수·양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결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고 상당히 충돌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나서서 완충역할을 해서 일단 조절했습니다만 2025년도 무상사용이 만료되는 지하상가 6개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거기도.

그런 걸 보면 광주광역시는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포 입찰을 이제 나가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 안경자 의원

예, 맞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 얘기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행법이 엄연히 살아 있고 한 상황에서 기타 조치를 하는 것은 시장보고 법을 위반하라는 건데 제가 무슨 권한으로 법을 위반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까?

● 안경자 의원

아니 절대, 시장님 저는 법을 위배하라는 건 아니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상사용 20년, 유상사용 10년의 기준이 이들한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또 하나 아까…….

● 안경자 의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포괄승계인의 자격이고 전대인들은 시설관리공단과 계약한 전대인에 불과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니까 의원님, 보세요.

● 안경자 의원

다만 그 애로사항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30년 동안 받으셔서 직접 운영한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려고 그러냐면 행안부에 이와 관련한 문의를 해서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명입찰이 가능하면 그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30년 동안 운영한 분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전대한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대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 안경자 의원

그러니까 전전대입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하는 분들은 임대료를 엄청나게 부담하면서 그분들이 세금
다 부담하고, 그런 분들에게 공정한 입찰에 참여해서 직접 할 수 있는 걸 기회를 줘야 되고.

그리고 본래 협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 · 양여 등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대전시하고.

그래서 읊은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권리, 운영권을 양도 · 양여 또는 재위탁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경자 의원

맞습니다, 그건…….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런데 지금 70%가 이런 것이 횡행한다면 시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누가 팔아먹고 그걸

가지고 보증금 받고.

● 안경자 의원

그건 해지사유에 맞습니다, 맞고요.

대전시에서 전대할 수 없다, 임대, 양도할 수 없다고 해서 1 대 99라는 계약서가 나오게 된 거고 그건 사적계약입니다.

그렇지만 대전시와 상인회는 공적계약에 해당되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관리위탁과 일반 무상사용과 유상사용은 또 다릅니다, 법적 기준이.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중앙로지하상가와…….

앉으세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예.

● 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상가, 역전지하상가 위탁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전지하상가는 현재 대전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세입으로 사용료와 관리비 포함해 11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전시 세출예산은 19억 9,600만 원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앙로지하상가는 현재 30억이 사용료로 들어오고 5억 정도가, 청소경비용역에서 3억 정도가 들어가고 2억 정도는 기타 중요한 시설보수가 있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관리비 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그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려주세요.”라고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는 관리위탁을 상가에 주었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47명의 직원을 고용해서 그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은 역전지하상가보다 훨씬 많은 관리비를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47명에 대한 인건비를 최저급여로 따져 보고 한 가구당, 601개의 가구당 따져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는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역전보다 비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화면 부탁드릴게요.

집행부도 상인회도 어떻게 보면 너무 신뢰가 돈독하게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상가가 번영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상임위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상인 중에 타지인이 많다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상인회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확인을 공문으로 받아본 결과 타지인이 19% 정도 비율이 되어 있어서 대전시민이 80%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동서관통도로 협약에 의해서 계약 갱신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수익허가가 아닌 사용허가로 이게 바뀌게 됐어요, 법령이.

2022년 4월부터 개정된 것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 적용에 있어서 무상사용 그다음에 유상사용의 기간 그다음에 관리위탁의 적용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집행부도 해석을 의뢰해서 집행부도 상인회도 관계 재정립의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동영상 보여주세요.

(11시 06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07분 영상자료 종료)

저 영상에 담아 있는 분들은 그래도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아까 시장님의 말씀하신, 아까 그 민원을 내신 분들은 목소리를 내는 순간 계약이 해지 당하고 각종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장우 시장의 법과 원칙, 그것은 저도 맞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처음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고요.

대신에 “대전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도 당신들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전시도 법과 원칙의 범위 안에서 이 문제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은 사실은 관을 믿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와 분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내 생활, 소비에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면 흐르는 풍문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정부, 우리가 믿는 시청을 믿고 그 정책을 믿고 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본 의원은 소비자단체 대표로서 정부의 요모조모를 경험함에 있어 그때그때의 행정편의에 입각해 이루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살아가기에 바쁜 직장인, 시민들의 주머닛돈 세대당 560원을 지키려 노력해왔던 저로서는 저희 동네 일이고 대전시민의 삶이기에, 그리고 저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경매 세 번이라는 아픔을 겪어본 한 사람으로 이 사안을 접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저는 가장 먼저 이 사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시민의 삶을 걱정하시고 개선하시려 애쓰고 계신 그 마음을 알기에 더욱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집행기관석에서)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안경자 의원

시장님 더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주시지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좀 전에 의원님의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시장한테 다른 방안을 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고 인천 포함한 서울, 다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배해 가면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명확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데 이는 전체 146만 시민들에 대한 형평성 위배의 발언이시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그동안 불법으로, 관행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정편의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 행정편의 때문에 왜곡되어 있던 구조들을 그냥 놔두고 저보고 넘어가라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관리비 말씀하시는 데 사용료 부분은 아마, 비교하시니까 사용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쪽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 안경자 의원

사용료도…….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아닙니다, 아까 보니까 70만 원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 안경자 의원

사용료 30만 원부터 200만 원 가까이까지,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면 그보다 소수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지금같이 전전대 같은 경우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 안경자 의원

맞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우리 시가, 책임 있는 시 산하기관이 관리했을 때는 앞으로 이런 전전대 같은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들 아픔은 압니다만 아무리 아픔이 있어도 법을 위반하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어느 국회의원도 법을 위반하면서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법을 위반했을 때 대통령도 탄핵 당하는 거 아니에요?

● 안경자 의원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서 지난번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이 그분들 아픔을 아는 건 저도 십분 이해합니다.

저도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과 그런 것들을 편법으로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저한테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안경자 의원

저는 법과 원칙을 어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러면 됐습니다.

● 안경자 의원

방법을 찾아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거고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타 전국의 시장과 관계가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충분히 검토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들이 상당히 맞지 않고요.

저희가 전 지원들 조사를 다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안경자 의원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